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공청회 및 의견 개선 기회 안내

개정 공고된 규정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5월,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은 HRA 장례비 지원금을 1,700달러로 인상하고 장례 혜택 상환 과정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비상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HRA는 이제 이번 연도 말까지 1,700달러 지원금을 연장하고 비상 규정의 기타 조항도 영구적으로 확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진행됩니까?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은 개정 공고된 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OVID-19로 인해, 해당 공청회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WebEx를 통해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공청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646-992-2010번으로 전화를 거십시오. 안내 음성이 나오면, 미팅 ID: 129 932 2460을 입력하십시오.

- **인터넷 동영상과 오디오:**

웹사이트 <https://nyc-dss.webex.com/nyc-dss/j.php?MTID=m9d8c896bf57be4b442041325357a19bf>를 방문하십시오.

안내 음성이 나오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십시오.

미팅 ID: 129 932 2460
비밀번호: Burials

개정 공고된 규칙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개정 공고된 규칙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NYC 규정 웹사이트 <http://rules.cityofnewyork.us>를 통해 HRA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의견서를 NYCRules@hra.nyc.gov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목에 "Burials"를 포함시키십시오.
- **우편.** 아래 주소로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HRA Rules
c/o Office of Legal Affairs
150 Greenwich Street, 38th Floor
New York, NY 10007

용건이 장례식 혜택 상환 규정에 대한 의견 제시라는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917-639-0413번에 팩스로 의견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Burials"를 포함시키십시오.
- **공청회에서의 발언.** 7월 22일까지 929-221-7220번으로 전화하거나 NYCRules@hra.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발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자를 호명하며 최대 3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있습니까? 의견서 제출 기한은 7월 23일 자정입니다.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의견서는 7월 23일까지 HRA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참석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청회 참석 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당국에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NYCRules@HRA.nyc.gov로 우편물을 보내 알리실 수 있습니다. 929-221-7220번으로 전화하여 알려주셔도 됩니다. 사전에 통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7월 16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공고된 규칙과 관련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개정 공고된 규칙에 관해 제시된 의견은 웹사이트 <http://rules.cityofnewyork.us/>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 수일 내에 개정 공고된 규정과 관련하여 온라인에 제출된 모든 의견 사본, 서신으로 제출된 모든 의견 사본, 구두로 전달된 모든 의견의 요약은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됩니다.

본 HRA 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 HRA 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는 뉴욕시 헌장 603절과 1043절 및 뉴욕 사회 복지법(New York Social Services Law) 141절입니다.

HRA의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HRA 규정은 뉴욕시 규정 제68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공고된 규정이 HRA의 규정 의제에 포함됩니까? 본 규정은 HRA가 가장 최근의 규정 의제를 공표할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규정 입안 과정은 어떤 법률을 따릅니까? 새로운 규정 입안 또는 개정 시, HRA는 반드시 뉴욕시 헌장 1043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문 역시 뉴욕시 헌장 1043절의 요건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비상 규정의 효력 연장에 대한 안내

뉴욕시 헌장 1043(i)(2)절에 따라, 2020년 5월 2일 공표되어 HRA의 장례 혜택 상환 프로그램을 특정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비상 규정이 2020년 8월 31일까지 추가로 육십(60) 일 연장된다는 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 60일의 기간은 HRA가 뉴욕시 헌장 1043(e)절에 명시된 공개적인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절차를 완료 후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데 필요합니다.

개정 공고된 규정의 근거 및 목적

뉴욕시에 미치는 COVID-19 팬데믹의 전례 없는 영향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위 있고 엄숙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시의 가장 취약한 저소득 인구에게 치명적인 사망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 사회복지부 / 인적자원관리국(DSS/HRA) 국장은 2020년 5월 2일 자로 장례식 혜택 상환 프로그램에 관한 비상 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뉴욕시 행정 절차법(City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APA)에 따라, 비상 상황으로 채택된 규정은 해당 기관이 60일 이전에 "최종" 규정이 되기 위한 공표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개시하지 않는 한 60일간 효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HRA는 이로써 해당 비상 규정을 연장하거나 다양한 조항을 영구히 채택하기 위해 공표 및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개시하는 바입니다.

현재, 주법에서는 최대 900달러까지 장례식 지원금의 부분 상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정부는 900달러 이하의 장례식 지원금만 부분적으로 상환하며, 9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적으로 지방 사회복지 지역구의 지방 재원에서 지출합니다. 해당 비상 규정은 제공 가능한 장례식 지원금을 900달러에서 1,7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HRA는 이제 이 1,700달러 장례식 지원금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주정부로부터 추가 상환을 규정하는 법률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적 변경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시에서 추후에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HRA는 해당 비상 규정의 나머지 조항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HRA는 비상 규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의 영구화를 제안합니다.

- (1) 비용 상한을 1,700달러에서 3,400달러로 인상하고 하트섬(Hart Island)부터 총 비용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까지 고인 유해의 매장과 관련하여 장의사에서 부과하는 비용을 추가.

Korean

- (2) 직접 대면 신청을 의무로 하는 기존의 요건을 현 시점에서 강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 (3) 고인의 친구, 친척 또는 조직 동료가 장례식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사망일로부터 60일에서 사망일로부터 120일간으로 변경.
- (4) 장례식 비용 지원금 수급 자격이 대상이 되는 누구나 매장이나 화장 전후로 언제든지 그러한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DSS/HRA가 매장 전 또는 화장 전 신청에 대해 2영업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는 요건을 유예.
- (5) 지급할 금액을 결정할 때 고인의 사망 시점에 유동적이거나 이용 가능하지 않고 또 신청 시점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자원이나 소득의 가치를 매장 지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 그러나, DSS/HRA는 주법에 부합하는 그러한 자원에 대해 회수할 권리 보유.
- (6) 특별히 재향 군인 장례에 관해서는, 칼버튼 묘지(Calverton Cemetery) 외 민간 묘지 내 매장의 경우 제68조 2-09절에 의거해 장례식 비용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 삭제.

본 개정 공고된 규정에 대한 DSS/HRA의 법적 근거는 뉴욕 사회 복지법 141절 및 뉴욕 시 헌장 603 및 1043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텍스트에는 밑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텍스트는 [대괄호]로 표시됩니다.

제1조. 뉴욕시 규정 제68조는 13장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장: 장례식 혜택 상황에 대한 변경 사항

13-01. 장례식 혜택 상황에 대한 일반 변경 사항

그 반대로 본 조 제2장의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HRA 장례식 지원금에 대한 모든 신청에 대해 다음의 조항이 적용된다.

(a) 본 규정 제2장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13-02절 또는 제2장에 규정된 지원금은, 해당되는 대로, 본 절 제2-02절에 정의된 대로 총 장례 비용이 3,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용할 수 없다. 그러한 3,400달러 상한의 초과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비용은 무시한다.

(1) 화장 또는 매장지 및 개요 비용과

(2) 2020년 3월 12일 이후 하트섬에 매장된 시신의 매장과 관련하여 장의사에서 부과한 일체 비용.

(b) 장례식 지원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 기한을 사망일로부터 육십(60) 일에서 백 이십(120) 일로 연장한다.

(c) 장례 비용 지원금 수급 자격이 있거나 본 절이나 제2장에 따라 자격이 되는 자는, 해당되는 대로, 매장이나 화장 전 또는 후에 그러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DSS/HRA가 매장이나 화장 전에 이루어진 신청에 대해 2영업일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는 본 조 2-09(d)절의 요건은 유예한다. 그러나, DSS/HRA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모든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d) 본 절이나 제2장에 의거해 신청은, 해당되는 대로, 직접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며 직접 대면, 온라인, 이메일, 팩스 및 DSS/HRA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기타 원격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 지원금 금액을 결정할 때, 고인 사망 시점에 유동적이거나 이용 가능하지 않고 신청 시점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자원 또는 소득의 가치를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DSS/HRA는 주법과 부합하는 그러한 자원에 대하여 회수할 권리를 계속 보유한다.

Korean

(f) 칼버튼 묘지가 아닌 민간 묘지에서 발생하는 재향 군인 장례에 대한 지원금을 금하는 본 조 2-09(b)(ii)절의 규정은 유예한다.

13-02. 장례식 지원금의 잠정 인상

반대로 본 조 제2장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되는 신청의 경우, 제2장에 명시된 DSS/HRA에서 지급 가능한 장례 비용 지원금은 1,700달러이다. 본 지원금은 제2장에 정의된 대로, 본 장 13-01절의 세목 (a)의 단락 (1)과 (2)에 명시되어 그러한 세목에 명시된 상한을 결정할 때 적용되지 않은 비용을 장례 비용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DIVISION OF LEGAL COUNSEL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56-4028**

헌장 §1043(d)항에 따른

확인서

규정 제목: 장례 지원에 관한 개정 조항(영구 규정)

참조 번호: 2020 RG 064

규정 제정 기관: 인적자원관리국

본인은 이 담당실이 뉴욕시 헌장 1043(d)절에 따라 상기 참조된 개정 공고된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상기 참조된 개정 공고된 규정에 대해 다음을 확인합니다.

- (i) 법 조항을 인가받기 위해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 (ii) 기타 관련 규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iii)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좁은 범위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iv)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규정의 명확한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규정이 부과하는 요건에 대한 근거와 목적을 밝히는 진술문을 포함합니다.

/s/ STEVEN GOULDEN
뉴욕시 변호인 대행

날짜: 2020년 6월 17일

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Y 10007

212-788-1400

현장 1043(d)절에 따른

확인서 / 분석

규정 제목: 장례 지원에 관한 개정 조항(영구 규정)

참조 번호: HRA-26

규정 제정 기관: 인적자원관리국

본인은 뉴욕시 법령 1043(d)절의 요건에 따라, 상기 기술된 개정 공고된 규정을 분석했으며, 상기 개정 공고된 규정에 대해 다음의 결론을 얻었음을 확인합니다.

- (i) 각각의 규제 대상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 작성됨
- (ii) 각 규제 대상 지역사회에서 본 규정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시된 본 규정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며,
- (iii) 본 개정 공고된 규정은 위반, 위반사항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과 관련된 처벌의 변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s/ Francisco X. Navarro

시장 행정실

2020년 6월 17일

날짜